

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59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“고독사”의 정의를 정비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제명변경 「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“1인 가구” 정의 삭제
- 고독사 정의 변경(안 제2조)
- “1인 가구” 삭제 및 “가구”로 변경(안 제1조 ~ 제4조, 제6조 ~ 제7조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4. 9. 19. ~ 2024. 10. 10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[붙임 5]

○ 방침결정문 : [붙임 6]

[붙임 1]

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
조례”를 “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”
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”를 “조례는 「고독사 예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, “1인 가구의 사회적”을
“가구의 사회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
제4호 중 “1인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2. “고독사”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
한다)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 가구의 사회적”을 “사회적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예방계획의 수립)”을 “(시행계획의 수립)”으로
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방계획을 5년마다”를 “시행
계획을 매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성별, 연령, 생애주기

별”을 “생애주기별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인 가구 고독사”를 “고독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이 경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희망복지팀장 황 선 애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강 은 실 (행정 302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1인 가구</u>”란 한사람이 단독으로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고독사</u>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<u>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u>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-----가구의 사회적-----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p> <p>2. “<u>고독사</u>”란 「<u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.</p>

3. (생략)

4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예방계획의 수립)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성별, 연령,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

8. ~ 9. (생략)

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가구-----
-----.

제3조(책무) ① -----

사회적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적용범위)-----

--가구-----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-----

-----시행계획을
매년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생애주기별-----

--

8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대상)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p>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<u>1인 가구</u> 중 건강 및 경제 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<u>1인 가구 고독사</u>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2. ----- <u>가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----- <u>고독사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